



중국의 올림픽 관련 지적재산권보호 법안 소개

I. 입법 배경

2008년 중국의 화두는 올림픽이다. 중국 정부는 이미 수 년 전부터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국제공항 증축 및 대대적인 도시 정비는 물론 법적으로는 흥분제 금지조례(反兴奋剂条例, 2004), 치안관리 처벌법(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 2006) 등의 관련법규를 정비하는 등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다. 본문에서 소개할 올림픽상징 보호조례(奥林匹克标志保护条例, 이하 ‘보호조례’) 및 올림픽상징의 등록 및 관리방법(奥林匹克标志备案及管理方法, 이하 ‘관리방법’)과 북경시 올림픽 지적재산권 보호규정(北京市奥林匹克知识产权

保护规定, 이하 ‘북경시 보호규정’)은 올림픽과 관련된 지적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으로, 지적재산권 보호가 매우 취약한 중국의 실정에서 올림픽상징 등의 관련 지적재산권의 효과적인 보호를 위해 제정한 것이다.

먼저 각 법안의 관계를 살펴보면 ‘보호조례’는 국무원이 제정한 전국 범위의 조례이며, ‘관리방법’은 ‘보호조례’의 시행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호조례’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 규정과 절차를 담고 있다. ‘북경시 보호규정’은 북경시 인민정부에서 제정한 것으로 올림픽이 개최되는 북경내에서 효력을 가지는 지역성 규범이나, 실제 내용에서는 올림픽상징의 정의과 범위규정 등 ‘보호조례’와 유사한 규정을 담고 있는데, 이

법안명	입법단위	공 표	시 행
올림픽상징 보호조례 (奥林匹克标志保护条例)	국무원	2002. 2. 4	2002. 4. 1
올림픽상징 등록 및 관리방법 (奥林匹克标志备案及管理方法)	공상행정관리총국	2002. 4. 22	2002. 6. 1
북경시 올림픽 지적재산권 보호규정 (北京市奥林匹克知识产权保护规定)	북경시 인민정부	2001. 10. 9	2001. 11. 1

는 전국범위의 ‘보호조례’ 보다 ‘북경시 보호규정’을 먼저 입법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각 법안이 규정하는 올림픽 관련 지적재산권 보호의 내용들을 총괄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II. 올림픽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법안의 주요 내용

1. 올림픽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법안의 목적

‘북경시 보호규정’ 제1조는 “올림픽 관련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적재산권 권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여 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본 법을 제정한다”라고 입법취지를 밝히고 있다. 또한 ‘보호조례’ 제1조는 “올림픽 상징의 보호를 강화하고 올림픽상징 권리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라고 하여 법안의 목적이 올림픽상징 등 올림픽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2. 올림픽 관련 지적재산권의 보호 대상

각 법안은 올림픽 관련 지적재산권 법안의 보호 대상을 ① 국제 올림픽위원회의 오륜기 표지, 올림픽 기, 올림픽 격언, 올림픽가(歌), ② 올림픽, 올림픽아, 올림픽게임 및 관련 약칭 등의 고유명칭, ③ 중국 올림픽위원회의 명칭, 표지, 상징, ④ 북경 올림픽운영위원회의 명칭, 표지, 상징, ⑤ 제29회 올림픽조직위원회 명칭, 표지, 제29회 올림픽 마스코트, 대회가(歌), 구호, ‘북경2008’, 제29회 올림픽 및 그 약칭 등의 상징, ⑥

올림픽현장과 제29회 올림픽 개최도시 계약서의 규정 및 기타의 올림픽과 관련된 상징으로 규정(‘보호조례’ 제2조, ‘북경시 보호규정’ 제3조)하고 있다. 특히 ‘북경시 보호규정’은 증문과 영문 모두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두 법안 모두 ‘북경2008(北京2008)’도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받는 대상으로 보고 있다.

두 법안은 올림픽 관련 상징의 무단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보호조례’는 특히 상업적 사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보호조례’가 규정하는 영리목적의 상업적 사용이란 ① 올림픽상징을 상품, 포장, 용기 및 상품거래관련 문서에 사용하는 행위, ② 올림픽상징을 서비스 항목에 포함시키는 행위, ③ 올림픽상징을 광고, 상업전시, 영리목적의 공연 및 기타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행위, ④ 판촉, 수입, 수출과정에 올림픽상징을 사용하는 행위, ⑤ 올림픽상징을 제조 및 판매하는 행위, ⑥ 일반인으로 하여금 올림픽 위원회, 조직위원회 등과 협찬, 지원의 관계가 있다고 오인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북경시 보호규정’ 제8조는 앞에서 언급한 상업적 영리행위에 더하여 올림픽상징을 위조하거나 임의로 만드는 행위, 올림픽상징을 이용하여 유사한 상표 등을 만드는 행위, 기업이나 사회단체, 기타 조직이 올림픽과 연관된 이름을 사용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지명, 건축물, 장소에 올림픽상징 및 유사한 상징을 사용하는 행위를 명시하여 금지하고 있다. 또한 권리침해 행위를 위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창고, 운송, 우편 서비스, 은닉 등을 제공하는 경우도 ‘북경시 보호규정’에 의거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3. 올림픽 관련 지적재산권의 주체

‘보호조례’는 올림픽 관련 지적재산권의 주체를 국제 올림픽위원회, 중국 올림픽위원회 및 제29회 올림픽 대회조직위원회로 규정하고 이들 사이의 권리배분은 올림픽 현장과 제29회 올림픽개최도시 계약서에 의하도록 하였다(제3조). 이와 더불어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권리를 획득한 당사자(‘북경시 보호규정’ 제2조)를 관련 법안의 ‘권리자’로 규정한다.

4. 올림픽 관련 지적재산권의 등록과 사용

올림픽 관련 지적재산권의 등록과 사용의 주관부문은 공상행정관리부문이다. ‘보호조례’ 제5조는 주관부문에 대해 전국범위에서는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문이 담당하고, 각 지방에서는 현(縣)급 이상의 인민정부 공상행정관리부문이 이를 담당하도록 규정하였다. ‘북경시 보호규정’은 이에 대해 ‘공상, 지적재산권, 판권 등의 행정관리부문(‘북경시 보호규정’ 제10조)으로 규정하여 ‘보호조례’와 약간 다른데, 상위법인 ‘보호조례’에 의해 공상행정관리부문에서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올림픽상징 사용 허가는 권리자와 사용계약을 통해서 이루어 진다. 그 중 국제 올림픽위원회의 오륜기 표지, 올림픽 기, 올림픽 격언, 올림픽가(歌), 올림픽, 올림픽아, 올림픽게임 및 관련 약칭 등의 고유명칭의 사용허가는 국제올림픽위원회 및 그 수권기관과 계약을 체결해야하며, 중국 올림픽위원회의 명칭, 표지, 상징은 중국올림픽

위원회, 기타 북경 2008년 올림픽운영위원회의 명칭, 표지, 상징, 올림픽조직위원회 명칭, 표지, 올림픽 마스코트, 대회가(歌), 구호, ‘북경2008’, 올림픽 및 그 약칭 등은 조직위원회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다(‘보호조례’ 제8조). 올림픽상징의 사용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며(‘관리방법’ 제6조), ① 허가하는 올림픽상징과 그 등록번호, ② 올림픽상징을 사용하는 상품 혹은 서비스 범위, ③ 지역범위, ④ 기간을 명확히 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한다(‘관리방법’ 제7조).

신고(备案)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먼저 올림픽상징의 권리자는 직접 상표국에 신고하거나, 상표권 대리자격을 가진 조직을 통하여 권리내용을 공상행정관리부문에 신고하여야 한다(‘관리방법’ 제2, 3조). 신청이 ‘보호조례’ 및 기타 관련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상표국은 이를 권리자에게 서면통지 및 공고(公告)하고,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서면으로 이를 통지한다(‘관리방법’ 제5조). 올림픽상징 사용허가 계약을 맺은 자는 1월 이내에 계약서 복사본을 상표국에 제출하고 상표국은 이를 등록한 후 서면으로 권리자에게 통지한다(‘관리방법’ 제8조).

‘관리조례’ 및 ‘관리방법’에서 규정하는 절차를 거쳐 올림픽상징을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등록번호와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 위반하는 경우 현급 이상의 공상행정관리부문은 기한을 두어 이를 시정하도록 하고, 기한내 시정하지 않는 경우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관리방법’ 제9조).

5. 공상행정관리부문의 직권범위

공상행정관리부문의 올림픽 관련 지적재산권 침해행위의 조사와 처분에 대해 직권을 가진다. ‘보호조례’와 ‘북경시 보호규정’은 공상행정관리부문의 비교적 강력한 조사권을 인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상행정관리부문의 협의가 포착되는 경우 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수 있고, ① 당사자 심문 및 올림픽상징 사용권과 관련된 조사, ② 관련 계약서는 물론 영수증, 장부 및 기타 관련 자료의 열람, 복사, ③ 관련 물품에 대한 조사 및 증거물의 봉인, 압류 등을 포함하는 강력한 직권을 가진다. 또한 공상관리부문의 조사에 대해서 당사자가 협조할 의무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보호조례’ 제11조).

6. 올림픽 관련 지적재산권의 분쟁해결과 법률 책임

올림픽상징을 허가를 얻지 않고 사용했을 시에는 먼저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서 분쟁을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으며, 동시에 공상행정관리부문의 행정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공상행정부부는 권리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침해행위를 즉시 중지할 것을 명령하는 한편, 관련상품 및 올림픽상징 제작 설비를 몰수하거나 소각할 수 있으며, 동시에 위법소득의 5배 이내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당사자가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는 행정소송법 절차에 의거 처분통지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권리

침해인이 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상관리부부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기관의 집행력을 확보하였다.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 공상행정관리부부는 당사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올림픽상징의 불법사용의 배상액에 대해 화해를 주재하며, 당사자가 화해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는 민사소송절차에 의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올림픽상징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보호조례’ 제10조, ‘북경시 보호규정’ 제12조, 제14조).

올림픽상징 사용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결정은 권리침해로 인한 권리자의 손해액 혹은 권리침해자의 소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때 권리침해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비용도 포함한다. 그러나 해당 상품을 판매한 선의의 판매자는 상품이 올림픽상징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을 몰랐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관리조례’ 제13조).

상표국의 관련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재심법(中华人民共和国行政复议法), 혹은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中华人民共和国行政诉讼法)에 의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7. 기타

올림픽 관련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보호조례’와 ‘북경시 보호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이를 보호하는 한편, 지적재산권으로서 현행 중국 저작권법(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중국



상표법(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특허법(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및 중국 특수표지관리조례(特殊标志管理条例) 등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보호조례’ 제14조). 또한 수출입 제품 중 올림픽 관련 지적재산권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는 중화인민공화국세관법(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과 중국지적재산권보호관련 세관조례(中华人民共和国知识产权海关保护条例)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다(‘보호조례’ 제12조).

장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제품을 홍보하거나 소위 ‘짜퉁’ 상품이 창궐할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바이며 이에 중국 정부는 비교적 강력한 조사권과 집행력을 부여한 ‘보호조례’와 ‘북경시 보호규정’ 등을 제정하여 올림픽 관련 지적재산권 보호를 기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국민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의식이 희박해 올림픽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규제와 함께 적극적인 홍보활동 및 지속적인 행정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III. 평가

주지하다시피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은 매우 취약하다. 지난 스징산(石景山) 유원지 사례¹⁾에서 보여지듯, 중국 정부의 지적재산권 보호 의지는 높은 편이 아니며 국민들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의식도 매우 낮다.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통해 달라진 세계속의 중국의 위상을 보여 주려는 중국의 입장에서 올림픽상징이 무단으로 도용되어 대회에 영향을 주게 된다면 오히려 올림픽을 통해 대외 이미지 추락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올림픽 기간을 전후하여 올림픽상징, 휘

김인식
(중국 주재 외국법제조사원)



1) 북경 근교의 정부 직영 스징산 유원지에서 무단으로 월트디즈니 캐릭터를 사용하여, 월트디즈니 사가 강력히 반발하는 사건이 있었다. 한 신문사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에 대해 중국인들의 23%는 지적재산권 침해가 아니며,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http://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071012601008>